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

통상산업부는 관보제13822호('98. 2. 5)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 (통상산업부 고시제 1998-9호) 을 개재했다.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5 및 제23조의7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고시의 목적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인 원자력환경기술원외의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환경기술원에 인도하는데 필요한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기술적, 행정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타 안전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원자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본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발생자” 라함)는 다음년도의 인도계획을 당해년도 11월말까지 환경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위원소폐기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자는 동위원소폐기물 인수의뢰서를 작성하여 인도 희망일 40일 전까지 환경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기술원은 인수예정일, 인수장소, 예상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인수계획을 인수예정일 20일 전까지 발생자에게 통보하며 발생자는 고지된 관리비용을 폐기물 인도전까지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법에 의한 운반신고대상(B형운반물) 방사성폐기물 인도시 발생자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임회하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하여야 한다. 포장방법 및 기록표작성에서는 가연성폐기물을 종이류와 플라스틱류등으로 구분하여 포장하게 되어있으며, 폐기물 분류에 있어서는 포장 및 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RI폐기물에 대하여 추가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분류, 포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방사능 표지는 노랑색 바탕에 적색글씨였으나 현행에는 노랑색바탕에 흑색글씨로 되어 있다. 또한 동위원소폐기물 기록표작성에 있어서 기존의 총폐기방사능량 및 수거시 총폐기방사능량을 기재하게 되어있었으나 현행고시에는 폐지되었다.

끝으로 이 고시 공포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인상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관리비용은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기획관리팀(담당: 박태진)으로 연락바랍니다.

참 고

연도별 관리비용

(단위: 원/200 l 드럼)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후
개봉선원폐기물	740,000	781,290	822,580	863,870	905,160 × (1 + 전년도 물가상승률)
밀봉선원폐기물	5,920,000	6,587,500	7,255,000	7,922,500	8,590,000 × (1 + 전년도 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 200 l 드럼 이외의 포장단위는 용량에 비례하여 적용